

## 「평화의 초석」 각명 대상자 인정 요령

### (목적)

제 1조 이 요령은 「평화의 초석」과 관련한 각명 기본 방침(1993년 10월 26일 결정, 2003년 6월 3일 일부 개정. 이하 「기본 방침」으로 한다.)에서 규정하는 「각명 대상자」에 대하여 그 신고 및 인정하는 수속을 결정하여 새로운 명부를 정리함으로써, 전몰자 추가 각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요령에 있어서 다음에 들고 있는 용어의 의의는 각 해당 번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른다.

(1) 유족 등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전몰자와 관련하여 민법 제 725 조에서 규정한 친척

ㄴ 전몰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

ㄷ 전몰자 혈족 중 민법 제 725 조에서 규정한 친척 이외의 사람

ㄹ 전몰자와 관련하여 자연으로 연결된 사람 또는 단체

ㅁ 전몰자와 관련한 유족회, 동창회 등

ㅂ 오키나와현 원폭피폭자협회

ㅅ 국가기관, 타지역 또는 시초손

ㅇ 미국에 있어서의 퇴역 군인회 등

(2) 제적부 등 호적법 제 12 조에서 정한 제적부 등본 외에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규정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그 위폐 사진

ㄴ 전몰자가 사망한 상황에 대한 관계자 증언

ㄷ 그 외 전몰자 이름, 사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 (신고)

제 3 조 기본 방침에서 규정한 각명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각명, 각명 수정 또는 삭제(이하 「추가 각명」으로 한다.)를 희망하는 유족 등은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오키나와현 평화추진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에게 신고 한다.

2 오키나와현 출신 전몰자와 관련한 신고는 유족 등으로부터 「전몰자 신고요」(양식 1)에 제적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신고는 제 2 조 제 1 호 그 또는 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그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리 과장에게 그 사정을 설명한 후, 제 2 조 제 1 호에서 정한 그 및 ㄴ 이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3 타지역 출신 전몰자와 관련한 신고는 출신지로부터, 추가 각명인 경우에는

「「평화의 초석」 추가 각명 전몰자 명부표」(양식 2), 각명 수정인 경우에는 「「평화의 초석」 수정(각명판·검색시스템) 전몰자 명부표」(양식 3), 각명 삭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평화의 초석」 삭제 전몰자 명부표」(양식 4) 가 제출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외국 출신 전몰자와 관련한 신고는, 추가 각명인 경우는 임의의 명부에 오키나와전 등으로 사망한 것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고, 각명 수정 또는 삭제인 경우는 임의의 명부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다.

#### (신고기한)

제 4조 앞 조에서 규정한 신고의 기한은 12 월 말을 원칙으로 한다.

#### (각명 대상자 인정심사회)

제 5조 유족 등으로부터 신고가 있었던 전몰자 추가 각명 등에 대하여 그 적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명 대상자 인정심사회」(이하 「심사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심사회는 오키나와현 평화추진과장,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장 및 오키나와현 국민건강보험·원호과장으로 구성된다.

3 심사회는 매년 3 월에 구성원 전원 출석 하에 개최되며, 그 심사 결과는 만장 일치로 결정한다.

4 심사회에서의 심사 결과, 만장 일치를 보지 못한 전몰자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이후, 새로운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유족 등이 재신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 (각명 대상자 인정 등)

제 6조 제 3조 규정에 따라, 유족 등으로부터 신고가 있었던 전몰자의 추가 각명 등의 적부에 대하여, 과장은 각명 대상자 인정심사회의 심사에 회부한다.

2 과장은 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명 대상자를 인정하고, 추가 각명 등을 해야 할 전몰자 명부를 3 월 말까지 작성함과 동시에, 신고를 한 유족 등에게 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 추가 각명 대상자가 된 전몰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 (추가 각명 등의 실시)

제 7 조 평화의 초석에의 추가 각명 등에 대하여는, 매년 3 월 말까지 작성된 전몰자 명부에 근거하여, 매년도 1 회, 원칙적으로는 오키나와현 위령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1974 년 10 월 21 일, 조례 제 42 호) 제 2 조에서 정한 「위령의 날」인 6 월 23 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 1 이 요령은 200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2003년도와 관련하여 제 4 조(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는, 같은 조 규정에 상관없이, 2003년 10월 말로 한다.

부칙

- 1 2004년도와 관련하여 제 4 조(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는, 같은 조 규정에 상관없이, 2004년 10월 말로 한다.